

KREI리포터회 회칙

제정 2016. 3. 31.

개정 2017. 11. 15.

KREI리포터회 회칙

제정 2016. 3. 31.

개정 2017. 11.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KREI리포터회”(이하 “리포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리포터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농정여론조사 업무관리규칙’ 및 각 년도 ‘KREI리포터 운영사업’ 방침에 의거, 리포터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에 소통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조직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리포터 중앙회”라 함은 리포터회를 대표하는 회장단과 고문, 감사 등 간부진을 포함한 지회 상위 조직을 말한다.
2. “지회”란 전국 9개 광역시군을 말하며, 지회의 장은 ‘지회장’이라 칭하고, 지회장을 보좌하는 회원을 ‘총무’라 칭한다.
3. “운영진”이란 연구원의 KREI리포터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운영조직을 말하며,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주관기관) 리포터회의 주관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구성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성실하게 농업 또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각 지역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선정·위촉한 자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 또는 농업관련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2. 현지통신원 중 이장, 마을발전위원장 등 지역활동가

3. 벤처농업대학졸업자 등 농업관련 기관 교육 이수자 중 해당기관이 추천한 자

4. 기타 리포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회원 선정) 회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시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단체 등에 추천 의뢰
2. 원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3. 원장 승인 및 위촉장 발급

제7조(위촉 기간) ①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활동이 종료된다. ② 회원 자격이 종료된 자 중에서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회원 위촉기간이 끝나 자격이 종료된 자는 자동적으로 명예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지역의 농업·농촌관련 현안문제,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수요나 여론, 농정건의, 연구가 필요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연구원에 알려주는 일

- ②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시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일
- ③ 연구자들의 지역 출장 시 조사업무에 협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
- ④ 리포터 상호간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일
- ⑤ 연구원이 리포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참여하는 일

제9조(회원 에 대한 지원) ① 리포터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정한 ‘마일리지’ 제도에 근거하며, 활동 정도를 판단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매년도 말에 상품으로써 지급한다. 단, 위촉기간이 종료된 명예회원은 별도의 사례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리포터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현장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정하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 ③ 리포터 활성화를 위해 리포터 및 지회활동을 평가하여 연 1회 우수포상을 실시한다.
- ④ 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과 각종 정보를 리포터에게 제공한다.
- ⑤ 중앙회 활동과 리포터 지역간담회 등 지회활동에 대해 연구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기타 리포터 활동에 필요한 신분증과 명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해촉) 리포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해촉 된다.

1. 리포터의 사망 또는 전업 시
2. 리포터가 해촉을 원할 때
3.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리포터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리포터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위촉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제11조(사업) 리포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이 추진하는 ‘리포터 운영사업’ 지원
2. 리포터 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3. 리포터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구원에 제안
4. 각 지회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
5. 기타 리포터 운영 목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제3장 총 회

제12조(구성)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위촉기간 중에 있는 회원을, 명예회원은 위촉기간이 지난 기수회원을 말한다.

제13조(회의종류 및 소집) ①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의 30인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모든 회원에게 일시, 장소 및 회의소집 목적 등을 명시하여 개최 10일 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연구원이 소집하는 전체연찬회 또는 운영협의회 등의 일정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별도로 개최하여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또는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추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원 또는 중앙회에서 심의를 부의한 사항
4. 감사결과의 보고

제15조(의결정족수) 본 회칙에서 별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며 중앙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중앙회 임원
 - 중앙회장 1인
 - 부회장 1인
 - 감사 2인
 - 고문 3인 이내
 - 간사 1인
 - 총무 1인
2. 지회 임원
 - 각 지회 지회장 및 총무 각 1인

제18조(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임기) ① 중앙회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추대하여 연구원장의 추인을 받는다. 연구원장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재선출 하여 추인을 요청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후보자는 전직 중앙회 간부진과 현직 지회 간부진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회 임원은 지회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중앙회 총무와 간사는 중앙회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승인과 연구원장의 추인을 거쳐 최장 3년까지로 한다. 단, 그 기간은 회원 위촉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중앙회 임원 중 고문의 임기는 기본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최초 임기는 이 회칙이 제정된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 ⑥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임원직을 승계한다.
- ⑦ 임원의 임기 개시는 연구원장의 추인을 받는 때로부터, 그 임기가 만료되어 새 임원이 연구원장의 추인을 받는 때까지로 한다.
- ⑧ 각 지회 지회장은 지회 회원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지회 회원의 과반 수 이상 동의를 얻어 지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지회 총무는 지회장이 지명한다.
- ⑨ 지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지회 회원의 승인과 운영위원회 추인 절차를 거쳐 최장 3년까지로 한다.
- ⑩ 중앙회 임원의 선출 건은 총회에 보고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중앙회장은 회원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을 대표해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고문은 리포터회 발전과 성과확산을 위한 활동을 주로 담당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⑤ 간사는 중앙회와 연구원 운영진, 회원간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담당한다.
- ⑥ 총무는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중앙회 제반 사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다.
- ⑦ 지회장 및 지회 총무는 각 지회의 회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간담회 등을 주관하고, 회원 간 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주관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리포터회 목적 위배, 업무 방해, 불법 및 부당 행위를 이유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리포터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진과 리포터 임원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연구원에 설치 운영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원 리포터 주관 부서장 등 운영진 3인 이내, 리포터 중앙회 임원과 지회 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리포터 주관 부서장과 리포터 중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 ④ 운영위원회 의장은 연구원 리포터 주관 부서장과 리포터 중앙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리포터 주관 부서장은 리포터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 심의와 관련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주관하며, 중앙회장은 임원 선출과 회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주관한다.
- ⑤ 중앙회 임원 선출은 운영위원들이 선정한 임시의장이 주관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1.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지회장 선출(추인)과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연구원과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
- 5. 기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또는 주관부서장,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에 운영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운영위원회 의결에 부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장이 사안의 내용상 서면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들에게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운영재원) 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구원 지원금 2. 특별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등

② 총회 등 회의 개최 시 필요경비는 연구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연구원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 (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사업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결산 및 감사) ①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정기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①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6장 보 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관련 규정 및 방침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총회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리포터 중앙회 및 지회 간부진 2/3 이상 찬성으로 시행하고, 연구원과 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는다.

제2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중앙회 임원 구성과 활동은 이 회칙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개시되며, 회칙 통과 전까지 회칙 제정과 관련된 논의와 심의는 연구원 운영진 및 직전 중앙회 임원진에서 관장한다. 단,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임시의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 이 회칙이 통과 된 후 중앙회 임원에 대한 구성 건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존 임원의 새로운 임기로서의 재신임 또는 재선출 하며, 임기는 회원 위촉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단, 이 회칙 제정 직후 새로운 임원 구성에 대한 건은 경과조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별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각 지회 임원 임기는 이 회칙 제정 이후 기수가 바뀔 때까지는 별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